


심 의 결 정 문

심의번호	INC-190329-12		
심의대상 	게시일	2019.03.21.	
	광고매체	M.뉴스인사이드	
	AD-Network	Ad4989	
	URL	http://www.newsinside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05787#_apl	
	모니터링	190321_ksu_M_newsinside_M6_4	
주 문	인터넷신문광고심의분과위원회는 상기 광고물에 대하여 ‘주의’ 결정 한다.		
적용조항	자율규약	제6조(광고제작 및 표현)제1항제5호 공포·협오적 표현	
	시행세칙	제21조(부당한 광고의 금지)제1항제1호 허위·과장 및 기만적 표현 제22조(공포심·협오감 유발 표현의 제한)제3호 질병·질환의 구체적 표현	
이 유	<p>1. (서비스 및 제품) 본 광고물의 서비스 및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인 “혈당엔 닥터-지”로 확인된다.</p> <p>2. (광고물) 본 광고물은 질병·질환으로 인한 괴사된 발바닥 이미지와 “발 썩는 당뇨 치료제 개발성공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.</p> <p>3. 본 광고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는 질병·질환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구체적·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. 이는 이용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.</p> <p>추가적으로 본 광고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고문구는 “발 썩는 당뇨 치료제 개발성공”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, 실제 광고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랜딩페이지 및 기타 자료를 통해 광고문구와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. 또한 광고물을 통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랜딩페이지 상에서 나타나는 제품 및 서비스는 치료 또는 의료적 효과를 제공하는 의약품이 아닌 “건강기능식품”으로 확인되었다. 이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·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·과장적 표현에 해당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.</p> <p>따라서 해당 광고물은 「자율규약」 제6조제1항제5호 및 「시행세칙」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제3호를 적용하여, 본 위원회에서는 공포·협오적 표현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/p>		
<p>2019년 3월 29일</p> <p>인터넷신문광고심의분과위원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원장 문철수 위원 김병희, 김준현, 손장혁, 윤명, 최승필</p>			

통 합 심 의 안 건

심의번호	INC-190418-12-926
심의대상	[붙임] 통합안건 자료 확인
주 문	인터넷신문광고심의분과위원회는 [붙임]의 상기 광고물에 대하여 ‘권고’, ‘주의’, ‘경고’ 결정한다.
이 유	<p>1. (광고물) 본 광고물은 과거 심의를 통해 ‘주의’ 결정을 받은 광고물이며, 이후에도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되어 심의에 상정되었다.</p> <p>이에 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 확인 결과 과거 심의 선례상 동일 또는 유사한 광고물로 판단되어, 심의선례와 동일한 주문과 이유를 근거로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‘주의’, ‘경고’ 결정한다.</p>
적용조항	<p>「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」 제5조(일반적인 준수사항)제2호 「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」 제6조(광고제작 및 표현)제1항제3호 「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」 제6조(광고제작 및 표현)제1항제4호 「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」 제6조(광고제작 및 표현)제1항제5호 「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」 제6조(광고제작 및 표현)제2항 「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」 제7조(광고게시 및 운용)제1항제1호 「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」 제7조(광고게시 및 운용)제1항제2호</p>
<p>2019년 4월 18일</p> <p>인터넷신문광고심의분과위원회</p> <p>위원장 문철수 위 원 김도승, 김안중, 김자혜, 한상필</p>	

[붙임] 통합안건

○ 내용의 위반(공포·협오)

※ 정렬기준은 매체 알파벳, 자음순

심의번호	매체	에드 네트워크	품목		광고물	근거 및 사유		출처	심의선례
			상품군	업체명		자율규약			